

[별표 2]

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

(제15조 및 제36조제2항관련)

1. 석유판매업의 등록여건

가. 일반대리점의 등록여건

구 분 \ 지 역	전 국
1. 시설기준	
가. 저장설비	70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저장시설일 것
나. 수송장비	50킬로리터 이상을 수송할 수 있을 것
2. 자본금	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

※비 고

1.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안에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인접한 시·도 안에 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.
2.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(선박급유에 한한다)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중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.

나. 용제대리점의 등록조건

구 분 \ 지 역	전 국
1. 시설기준	
가. 저장설비	15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저장시설일 것
나. 수송장비	20킬로리터 이상을 수송할 수 있을 것
2. 자본금	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

다. 주유소의 등록요건

구분 \ 지역	서울특별시	기 타 지 역
1. 시설기준		
가. 저장시설	4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	2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
나. 주유기	4대 이상일 것	2대 이상일 것
다. 공중화장실	1개소 이상일 것	1개소 이상일 것

라. 저장시설 과 주유기 의 구분설 치	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가 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또 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석유제품 공급자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. 이 경 우 비상표제품은 하나의 공급자 제품으로 본다.
2. 기 타	시·도지사는 관할지역이 도시계획·도로사정·환경여건 등 지역실 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외의 사항(주유소간 거리기준에 관한 사 항을 제외한다)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등록요건을 추 가로 정할 수 있다.

※비 고 : 공중화장실의 위치·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·도지사가 정하
는 바에 따른다.

라. 용제판매소의 등록요건 : 출자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

마.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의 등록요건 : 출자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

바.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요건

구 분	등 록 요 건
1. 저 장 시 설	4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저장시설일 것
2. 수 송 장 비	10킬로리터 이상을 수송할 수 있을 것

2.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

가.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의 등록요건

구 분 \ 지 역	전 국
1. 시설기준	
가. 저장시설	15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저장시설일 것
나. 수송장비	20킬로리터 이상을 수송할 수 있을 것
2. 자본금	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

※비 고 :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시·도안에 설치하여야 한다.
다만, 시·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인접한 시·도안에 이를
설치하게 할 수 있다.

나. 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 등록요건

구분 \ 지역	전 국
1. 시설기준	
가. 저장시설	2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
나. 주유기	1대 이상일 것
다. 공중화장실	1개소 이상일 것

라. 저장시설 과 주유기 의 구분설 치	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석유대체연료 공급자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. 이 경 우 비상표제품은 하나의 공급자 제품으로 본다.
2. 기 타	시·도지사는 관할지역이 도시계획·도로사정·환경여건 등 지역실 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외의 사항(주유소간 거리기준에 관한 사 항을 제외한다)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등록요건을 추 가로 정할 수 있다.

※ 비 고

1. 공중화장실의 위치·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·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2. 석유판매업(주유소)과 동일장소에서 석유대체연료판매업(주유소)을 하는 경우 별도의 화장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- 다. 석유대체연료판매소의 등록조건

구 분	전 국
저 장 시 설	2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저장시설일 것